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
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697,384,527	23,321,530
일반회계	564,229,525	16,926,886
특별회계	133,155,002	6,391,644
기타특별회계	23,453,179	703,594
· 주택사업특별회계	773,020	23,190
· 교통사업특별회계	18,333,015	549,990
·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,011,018	120,330
· 기반시설특별회계	336,126	10,084
공기업특별회계	109,701,823	5,688,050
· 상수도사업특별회계	25,858,999	775,770
· 하수도사업특별회계	63,742,824	1,912,280
·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20,100,000	3,000,00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124,545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
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